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

- 대구광역시 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2019. 7.



대구광역시 달서구

<http://www.dalseo.daegu.kr>

[평생교육과]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설 명 자: 평생교육과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19. 7. 1.부터 기존 장애 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 기준도입에 따라 행정상 혼란과 이로 인한 주민불편을 예방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 “장애인 1급에서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로 변경

### □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

- 본 조례안을 2019년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2019년 6월 28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장애정도 기준도입에 따른 주민불편을 예방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0012000
----------	---------

제출년월일: 2019. 7. 4.  
제출자: 달서구청장  
(평생교육과장)

## 1.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19. 7. 1.부터 기존 장애등급 폐지 및 장애정도 기준도입에 따라 행정상 혼란과 이로 인한 주민불편을 예방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2. 주요내용

가.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

- 1) “장애인 1급에서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로 변경

##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19. 6. 3.~6. 24.): 의견없음
- 2) 규제 심사: 원안동의
- 3) 비용추계서: 비대상
- 4)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 동의

##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장애인 1급에서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 ① (생 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p> <p>1. · 2. (생 략)</p> <p>3. 사회복지시설 수용 청소년, 소년소녀가정 아동, 가정위탁 보호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u>장애인 1급에서 3급</u>(보호자 1명 포함)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p> <p>4. ~ 7. (생 략)</p>	<p>제12조(이용료 징수 및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 <u>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u>-- -----</p> <p>4. ~ 7. (현행과 같음)</p>

# 【 관 계 법 령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 2015. 6. 22.>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2017. 2. 8.〉

⑧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